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69 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이인선·박정하·강선영

성일종 • 박준태 • 김정재

고동진 • 조정훈 • 배준영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 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	제27조(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
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거주	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
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	
두 갖추어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	<u>2030년 12월 31일</u>
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	
간투자법」 제41조제2항에 따	
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(「자본	
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	
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	
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	
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, 이	
하 이 조에서 "투융자집합투자	
기구"라 한다)에 투자하여 발	
생하는 배당소득은 「소득세	
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	
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	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